기업애로

01

민간 아이돌봄 기업의 돌봄인력 범죄경력 조회 허용

온라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체의 범죄경력 조회 기준 마련

추진부서 | 경기도 규제개혁과, 031-8008-4283

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

개선배경

-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2(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)에 따르면 같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 기준을 갖춘 기업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으나
- 플랫폼 기반 돌봄사업(직업정보제공사업, 통신판매업)을 운영하려는 기업이 법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지 못할 경우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, 아이돌봄 인력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임

〈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체 법적 지위 유형 및 업무 범위 〉

▶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체 법적 지위 유형
– 유료직업소개사업, 직업정보제공사업, 통신판매업, 사회적협동조합

▶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업무 범위
– 아이 보호, 놀이 활동, 아이 보호+아이 관련 가사, 아이 보호+일반 가사

개선내용

-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기업도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1조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되어, 소속 육아도우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



개선 전	개선 후
제11조의2(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)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	제11조의2(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)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 · 운영하려는 자는 **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, 시설 및 사업체의 법적 지위, 업무 범위**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추진과정

- ('25. 4.) 기업규제 현장간담회 개최
- ('25. 5.) 규제개혁신문고 건의(경기도→여성가족부)
- ('25. 6.) 여성가족부 수용
  - 등록기관의 형태, 시설 · 인력 기준, 서비스의 내용 등 기관의 등록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은 추후 하위법령 및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할 예정임
  - 이에 따라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다면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등록할 수 있고, 해당 기관에서 활동하려는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가능할 예정임

개선효과

- 육아도우미의 신원확인을 통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

